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8월 25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27일

3. 제안이유

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수수료 납부 방법 (안 제11조제5항)

- 수입증지 납부 → 수입증지, 현금,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

5. 검토내용

○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수수료를 현금·수입인지·수입증지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 신청으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기존의 충

청북도 수입증지에서 현금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- 입법예고('21. 7. 9.~'21. 8. 2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기존에 충청북도 수입증지에서 현금,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